

## 신용 보고 개인정보 보호 요강에 의한 권리 요약서

신용 보고 개인정보 보호 요강(Credit Reporting Privacy Code 2004)은 신용 보고 활동에 있어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신용 조사 기관(credit reporter)은 이를테면 여러분이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파산을 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판매하는 일을 합니다. 이 요강은 개인정보 보호법(Privacy Act 1993)과 함께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안내서에는 이러한 권리 중 일부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privacy.org.nz](http://www.privacy.org.nz)에 이 요강의 전문이 나오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경고: 이것은 요약 자료입니다. 이 요약서와 신용 보고 개인정보 보호 요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 사이에 차이점이 있을 경우에는 신용 보고 개인정보 보호 요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선합니다.

### 귀하에 대한 일부 정보가 보고될 수 있습니다

신용 조사 기관은 자체 신용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할 용도로 특정 유형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수집 가능한 정보 유형은 신용 보고 개인정보 보호 요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신용한도와 과거 결제 기록 등 보유 신용계좌
- 채무 불이행 전력(채권 추심 기관으로 이첩된 경우)
- 자신에게 불리하게 난 법원 판결
- 파산 또는 지급 불능(insolvency) 절차를 밟은 전력

### 정보 보유 및 보고에는 소정 기한이 있습니다

신용 조사 기관은:

- 일반적으로 이 정보를 4~5년간만 공개할 수 있고, 보유는 이보다 1년 더 할 수 있습니다.
- 계좌 폐쇄 후 2년까지 개인의 계좌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신용 정보를 무기한 보유할 수 있습니다.
- 복수 파산 정보를 무기한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특정인이 특정 목적으로 개인의 신용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신용 보고 개인정보 보호 요강은 개인의 신용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열람 가능자는 신용거래 신청을 심사 중인 신용 공여 기관입니다. 엄격히 제한된 경우에 한해 다음과 같은 사람도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귀하에게 세를 주기로 한 집주인
- 귀하를 채용하기로 한 고용주(그 직위가 상당한 정도의 재무 위험이 결부된 것이어야 함)
- 귀하의 모기지 보험을 담당하는 보험회사
- 귀하를 상대로 빚을 받아내는 채권 추심 기관
- 신용조회를 하는 정보기관 및 보안기관
- 소송 당사자
- 다른 법률에 의거해 업무를 집행하는 특정 정부기관

신용 조사 기관은 다이렉트 마케팅 목적으로 신용 정보를 공개하지 못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신용 확인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신용 공여 기관, 집주인, 고용주가 정보를 열람하고자 할 때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정 정부기관, 소송 당사자, 채권 추심 기관에 의한 정보 열람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용 조사 기관은 제3자에게 신용 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그 기록을 해두어야 하는데 본인이 요청할 경우, 보통 해당 기록을 보여줍니다.

### 자신이 사기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되면 신용 조사 기관에 신용 정보의 공개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 도용 같은 사기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되면 신용 조사 기관에 10일(휴무일 제외) 동안 자신의 신용 정보를 공개하지 말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 정보의 공개 중지 기간 중에는 신용 조사 기관에서 해당 정보를 평소대로 공개하지 못합니다.

이 때 신용 공여 기관이 신용 조사 기관에 해당 신용 정보를 요청하면 공개 중지 상태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 공여 기관은 그 사람이 사기 피해자가 되었을지 모르며, 타인이 그 사람 명의로 신용 신청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용 정보의 공개 중지 기간 중에 신용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신용 공여 기관에 정보를 공개해 주도록 신용 조사 기관에 요청하면 됩니다. 신용 조사 기관은 이 요청에 동의하기 전에 요청자의 신원을 신중히 확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재 계속 사기가 진행 중이라고 판단되면 신용 조사 기관에 10일(휴무일 제외)을 초과해 공개 중지 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 조사 기관은 귀하에게 자신이 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신용 조사 기관은 요청자가 사기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정보 공개 중지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자신에 대해 어떤 정보가 보유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청할 수 있는 정보

신용 조사 기관 측에 자신에 대한 보유 신용 정보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 보고서에 담긴 정보만 요청해도 되고 전체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 보고서에 담기지 않는 별도 정보로는 자신의 보고서를 열람한 사람의 전체 명단 같은 것 등이 있습니다. 신용 조사 기관이 자신에 대해 신용 점수를 매겼다면 이 점수에 대해 설명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 정보 보기

신용 조사 기관은 너무 지체함이 없이 요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일(휴무일 제외) 이내에 신속하게 정보를 보고자 하면 \$10을 초과하지 않는 적정한 액수의 수수료를 내야 할지 모르지만 그럴지 않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용 조사 기관은 정보를 요청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청자의 신분 확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 취득한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신용 조사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지 못합니다.

##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신용 조사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용 조사 기관은 보유 정보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오류를 알게 되면 즉시 정정해야 합니다. 신용 조사 기관은 당사자로부터 신용 보고서에 틀린 점이 있다는 통지를 받을 경우,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 조사 기관은 당사자의 주장을 접수하면 애초에 채무 불이행 사실을 통보해 준 신용 공여 기관에 문의해 진위를 확인합니다. 확인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신용 조사 기관은 해당 보고서에 플래그 표시를 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 신용 조사 기관은 언제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나?

신용 조사 기관은 정정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정보가 정확함을 확정할 것인지 가급적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을 내리는 데 20일(휴무일 제외) 이상 걸리면 그 사실과 사유를 요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정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

정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요청자는 반드시 그 사유를 들어야 합니다. 또 자신의 파일에 정정 요청 사실에 관한 메모를 입력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고서에 이 메모가 포함되어 공개될 것입니다.

### 정정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

정정이 이루어지면 신용 조사 기관은 최근에 그 사람의 신용 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있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당사자에게는 처리 결과를 알리고 수정된 보고서를 보내야 합니다.

### 정정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 보고서에는 현재 채무뿐 아니라 과거 신용 기록도 나옵니다. 일부 정보는 업데이트되어 후속 전개 상황을 반영하는 한 계속해서 보고될 수 있습니다. 과거 파산이나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으나 나중에 전액 변제한 사실 같은 것이 이런 정보에 해당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는 과거 사건의 정확한 전개 상황을 나타내게 됩니다.

## 신용 보고 개인정보 보호 요강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여길 경우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용 조사 기관이 이 요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되면 먼저 그 기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신용 조사 기관은 자체적인 민원 처리 절차를 마련해 놓는 한편, 공정하고 간단하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민원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조사 권한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Privacy Commissioner)에 재차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타결될 수 없는 일부 사안은 인권 심의 심판소(Human Rights Review Tribunal)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함과 더불어 신용 조사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명예 훼손이나 과실을 주장한다면 소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무료 법률 상담소(community law centre)에 문의하십시오.

**연락처 정보:**

Credit reporter: illion  
*Freephone line 0800 362 222*  
*Email address [pacnz@illion.co.nz](mailto:pacnz@illion.co.nz)*  
*Web address [www.illion.co.nz](http://www.illion.co.nz)*  
*Postal address PO Box 9589 Newmarket Auckland 1031*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실:  
문의 전화: 0800 803 909  
이메일: [enquiries@privacy.org.nz](mailto:enquiries@privacy.org.nz)  
웹사이트: [www.privacy.org.nz](http://www.privacy.org.nz)  
우편 주소: PO Box 10094, Wellington 6143

Note: This is an official translation released by the Privacy Commissioner pursuant to clause 8(3A) of the Credit Reporting Privacy Code 2004. In the event of a discrepancy between this translation and the English language version set out in schedule 4 of the Code, the English language version should be preferred.